

1. 예산총칙

2016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381,117,466 | 11,433,524 |
| 일반회계 | 334,952,791 | 10,048,584 |
| 특별회계 | 46,164,675 | 1,384,940 |
| 기타특별회계 | 46,164,675 | 1,384,940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| 1,887,845 | 56,635 |
| 수질개선특별회계 | 19,283,182 | 578,495 |
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| 670,386 | 20,112 |
| 농업소득기금특별회계 | 6,840,000 | 205,200 |
|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| 653,846 | 19,615 |
|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| 6,939,467 | 208,184 |
|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| 81,000 | 2,430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| 838,740 | 25,162 |
| 중소기업육성기금융통특별회계 | 4,834,550 | 145,037 |
|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| 141,000 | 4,230 |
| 공무원아파트특별회계 | 3,994,659 | 119,840 |

제 2 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·세출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서"와 같다.

제 3 조 201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9,5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의 총액은 3,509,282천원으로 하며, 재해·재난목적 예비비 335,634천원과 내부유보금 173,648천원을 포함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